

광주지방법원 2024. 11. 22 선고 2024가단135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규련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권

변론 종결 2024. 10. 25.

판결 선고 2024. 11. 2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7,776,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고, 주식회사 C는 2022. 7.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익산시 E 등 지상 물류창고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2,047,100,000원,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5개월로 정하여 D 주식회사에게 도급하여 시행하게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22차전355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다. 피고는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7.자 2023타채704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3. 11. 10.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차전370595), 위 법원은 2023. 11. 23. 원고는 피고에게 66,847,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F,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1.자 2023타채13674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24. 1. 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3,888,289원, 2024. 1. 4. 주식회사 F로부터 33,888,289원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을 2023. 11. 10.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22,047,100,000원 중 20,298,776,796원에 대하여는 원고, D 주식회사, 하도급업체와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고, D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 556,942,950원이 이미 지급되었으며, 청구금액 합계 5,563,161,331원에 이르는 22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가 있어 압류경합 상태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압류경합 상태에서 합계 67,776,578원(= 중소기업은행 33,888,289원 + 주식회사 F 33,888,289원)을 추심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는 2024. 6. 11. 마쳐졌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정산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피고가 추심한 합계 67,776,57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압류경합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합계 67,776,578원을 추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한종환